

사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56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'98. 11. 17

제출자 : 사 천 시 장

1. 제안이유

'98. 9. 12일자 사천시행정기구 및 직제개편으로 조례중 일부조항에 변동이 있어 재해대책본부를 개편된 직제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운영에 원활을 도모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사천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있어 통제관을 건설도시국장에서 지역개발국장으로 변경
- 나. 당초 마산지방해운항만청삼천포출장소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삼천포출장소로 명칭 변경

3. 법적근거

- 가.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[해양수산부령 제59호]
- 나.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

4. 개정조례(안) : 별첨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사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중 “건설도시국장”을 “지역개발국장”으로 한다.

제3조제5호중 “마산지방해운항만청삼천포출장소”를 “마산지방해양수산청삼천포출장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제2조 (재해대책본부의 운영) ㉠(생략) ㉡통제관은 <u>건설도시국장이</u> 되고, 담당관은 건설과장이 되며, 실무반은 시관련 공무원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 등으로 한다.	제2조 (재해대책본부의 운영) ㉠(현행과 같음) ㉡----- <u>지역개발국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
제3조 (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) 1. (생략) 2. (생략) 3. (생략) 4. (생략) 5. <u>마산지방해양수산청삼천포출장소</u> 6. (생략) 7. (생략)	제3조 (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)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4. (현행과 같음) 5. <u>마산지방해양수산청삼천포출장소</u> 6. (현행과 같음) 7. (현행과 같음)